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5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8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(안 제5조)
- 다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(안 제7조)
- 라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(안 제8조)
- 마. 대안교육기관 지원 (안 제10조)
- 바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.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지원)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지원, 교육 지원 사업
2.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지원 사업
3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4. 학교 밖 청소년 여가·문화·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
5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8조(지원센터 설치)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교육, 직업체험, 취업 및 자립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, 보급 및 정보제공, 홍보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6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센터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)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목적, 명칭, 주소 및 위치, 개관연월일
2. 교원자격, 시설규모, 학생 수 등 교육여건
3. 자산의 총액
4.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서

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

제12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,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·점검 등)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,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·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.

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·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”를 “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 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4장(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)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한다.